IBS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요약 정리

1 청탁금지법은 왜 필요할까요?

'청탁금지법'은 어느 곳, 누구에게나 깨끗하고,
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.

•*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법 제1조)*

2 누구에게 적용될까요?

공직자, 언론사 · 사립학교 · 사립유치원임직원 ·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,
공무수행사인*(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,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 자,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, 공무상 심의 · 평가 등을 하는 자),*
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

3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14가지

1. 인가 · 허가 등 직무 처리,
2. 행정처분 · 형벌부과 감경 · 면제,
3. 채용 · 승진 등 인사개입
4.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·탈락에 개입,
5. 공공기관 주관 수상 · 포상 등 선정 · 탈락에 개입
6. 입찰·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,
7. 특정인 계약 당자사 선정·탈락에 개입
8. 보조금 등의 배정·지원,투자 등에 개입,
9.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
10. 학교 입학·성적 등 업무 처리·조작,
11.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
12.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 개입
13. 행정지도·단속 등 대상 선정·배제, 위법사항 묵인,
14. 사건의 수사·재판 등 업무처리

•**<u>예외사항</u>**
-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
-공개적인 특정행위 요구,
-공공기관 업무관련 확인·문의 등 적법한 절차나 행위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청하는 것

IBS Intelligent Building Services

IBS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요약 정리

4 이런경우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합니다.

•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100만원,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
•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
•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
•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

•**예외사항**
-친족이 제공하는 금품
-오랜 친구가 질병,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
-불특정 다수 대상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 해당됩니다.

5 3·5·10예외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?

•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관련성이 있을 경우,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.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 입니다.

•**음식물 · 선물 ·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**
▷**음식물**: 가액범위 3만원
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. 다과, 주류, 음료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
▷**선물**: 가액범위 5만원
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
▷**경조사비**: 가액범위 10만원
축의금,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한느 화환·조화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

6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요?

•청탁금지법에서는 종업원등이 소속집단(법인,단체,개인 등)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소속집단(법인,단체,개인 등)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주기전 30초! 받기전30초!
30초의 생각이 신뢰의 IBS,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IBS Intelligent Building Services